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02호
2.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4.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II. 제안이유

- 청소년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분야를 찾아 분야별 직업들을 배우며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때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학부모, 동행하는 교직원 등 까지 감상 및 평가와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무적인 장치를 필요로 함.

III. 주요내용

- 기존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의견수렴)를 신설하여 교육감은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

고 반영하도록 명시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2. 11. ~ 2. 15.(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문성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02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에게 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을 살펴보면,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의 참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¹⁾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표-1] 진로교육 관련 의견수렴 여부 및 절차’와 같이 진로교육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참여자 의견을 조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1) 진로교육법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1] 진로교육 관련 의견수렴 여부 및 절차

대상	의견수렴 여부	의견수렴 대상 및 절차
학생	여	대상: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참가자, 진로체험관 이용자 절차: 행사 후 참가자 설문조사
학부모	여	대상: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고입진로설명회 참가자 절차: 행사 후 참가자 설문조사
교직원	여	대상: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교장·교감 진로교육 연수 참가자 절차: 행사 후 참가자 설문조사
		대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용 학교 진로담당 교사 절차: 설문조사 참여 요청 공문 발송

○ 그러나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²⁾에 의하면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립한 ‘[표-2] 2024학년도 진로교육 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진로교육 과정은 학교현장 특히, 학생·교사의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진로교육의 현장성과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표-2] 2024학년도 진로교육 운영 계획

1.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교육과정 강화	
	1-1. 진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1-1.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운영
	1-1-2. 초등진로교육 강화
	1-1-3. 학교진로활동실 구축·운영
	1-2. 학교급 전환시기 진로연계교육 강화
	1-2-1.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2)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2-2. NEIS 진로활동 정보 연계 및 활용
	1-3. 교원의	지속적인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1-3-1. 진로전담교사 운영
		1-3-2.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2.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진로체험 활성화		
	2-1. 경험을 통해 배우는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 내실화	
		2-1-1.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운영
		2-1-2. 진로체험관 운영
		2-1-3. 직업계고 매칭 진로체험의 날 운영
	2-2.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진로활동 강화	
		2-2-1.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2-2-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2-3. 진로활동 지원체계 강화	
		2-3-1. 2024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운영
		2-3-2. 진로교육 전문가 지원체계
3.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진로안전망 구축		
	3-1. 진로정보 제공을 통한 진로교육 공공성 강화	
		3-1-1. 진로체험망(꿈길) 운영
		3-1-2. 썬(SEN) 진로교육 자료 몽땅
	3-2. 다양한 학생 학부모 지원으로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3-2-1. 꿈키움(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3-2-2. 학부모 진로교육 활성화
	3-3.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교육 활성화	
		3-3-1.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3-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 중 하나로,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의견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반영하여 발의된 것이며³⁾,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2.13.).

3) 서울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5.2.5.)

문성호 서울시의원,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 모두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

- 지난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을 모두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받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했음을 보고
-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와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보완 및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알림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

관계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